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73
----------	------

발의연월일 : 2021. 2. 24.

발의자 : 김교홍 · 진성준 · 강준현
허종식 · 박영순 · 이성만
홍기원 · 문정복 · 조오섭
문진석 · 김회재 · 허영
소병훈 · 조웅천 · 박상혁
박찬대 · 천준호 · 장경태
정일영 · 송영길 · 이학영
진선미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권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

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275호),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2호),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48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정비구역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

라.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제5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하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u>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u></p> <p>②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u></p>